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0월 12일 류재구 의원등 24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0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10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 혜 성 의원)

□ 제안이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 우리시의 경우 중·상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형할인점·백화점등이 유치됨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중형 상점이 가능하므로 재래시장 주변에 중형 상점이 입점 될 경우 기존 재래시장 상권에 막대한 악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중형 슈퍼마켓의 면적규모를 제한하여 우리시의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 (안 제33조제2항제3호)

3.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상점 바닥 면적을 1천평방미터로 축소시키는 것은 상대성이 있을 것임. 시민들의 반응에 대하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조치법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자면 1천평방미터 미만 규모에 50점포가 있어야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도심권에는 재래시장이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할인 마트가 입점한다면 지역상권을 잠식할것으로 예상되어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바닥면적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 지역에서 대형할인 마트가 입점할수 있는 공간(지역)이 있을지 의문이고 시민들은 입장에서는 할인 마트가 입점하기를 희망할 것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변화 없는데 공급이 많아진다면 재래시장은 현대화된 점포에 비해 손님들의 외면을 받을것임.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때 동 조례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이 재건축된다면 특별조치법에서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시켜 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쟁 논리에서 본다면 시민들은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원할 것임.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 향후 10년동안 유지하고자 하는것을 보면 시장 활성화에 기준을 두고자 하는 것임. 재래시장도 지속적 현대식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9호
의결 년월일	2004. 10. 22 (제115회)

제출년월일 : 2004. 10. 12.

제출자 : 류재구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 우리시의 경우 중·상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형할인점·백화점등이 유치됨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중형 상점이 가능하므로 재래시장 주변에 중형 상점이 입점 될 경우 기존 재래시장 상권에 막대한 악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중형 슈퍼마켓의 면적규모를 제한하여 우리시의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점의 면적규모를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 (안 제33조제2항제3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 별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참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대상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2천제곱미터미만인 것”을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 ③ (건축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① (생략) 1.~5. (생략)</p> <p>② (생략) 1.~2. (생략)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및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이하생략)</p> <p>4.~8. (생략)</p>	<p>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4.~8. (현행과 같음)</p>